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10. 20.(수) 10:00

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
조례안  
(도시안전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8.

## 2. 제안이유

「건축법」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다. 특별회계 일시차입, 잉여금의 처리,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  - 2) 「건축법」 제87조의3
  - 3)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50조
- 나. 예산조치: 특별회계 조성 예정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조례의 목적,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(안 제1조~안 제3조)

- 「건축법」 제87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50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용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

#### 2)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
-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구청장이 부과·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5로 정하고 있음.  
금천구에서 최근 4년간의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는 평균 10억원이며 세입규모는 3억 5천만원을 비용 추계함.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 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○ 이행강제금×35% (4년간 평균 10억원)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	소계(a)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
이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비,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차량구입비 등에 연간 3억 4천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적정한 편성(안)으로 판단됨.

-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조항으로, 특별회계의 세출은 「건축법」이 정하는 센터 운영에 따른 제경비와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에서 정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관한

기술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음.

- 3) 특별회계 일시차입, 잉여금의 처리,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  
- 안 제8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. 12. 31.까지로 하고,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을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다. 검토의견

- 지난 2017년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(2017. 4. 18)을 통해 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서울시에서도 이를 근거해 대형사고의 재발방지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치구별 건축안전을 전담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요청.
-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 건축과 내 금천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,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천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 및 지원 사업 추진으로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건축법」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733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87조의3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3.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4. 제113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5. 그 밖의 수입금

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
3.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·연구비
4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5.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

[본조신설 2017. 4. 18.]

## □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

[시행 2021. 5. 2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046호, 2021. 5. 20., 일부개정]

제50조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1. 3., 2020. 10. 5.>

1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·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

2.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

3.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,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·점검비

4.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·점검비

5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

6.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

7.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

8.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·점검비 등

9.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·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·검사·업무대행 비용

③ 삭제 <2020. 10. 5.>

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, 이행강제금,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5.>

[본조신설 2018. 7. 19.]